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5.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4.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5.2.

다. 상정일자 :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7.5.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이홍주

가. 제안이유

기존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3조)

3. 검토보고 (김용범 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중 “「주택법」 제59조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으로 개정함.

○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함.

○ 안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제59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으로 개정함.

○ 안 제13조제1항 중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그 밖의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